

부 록 1-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1995—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5년 2월 23일
노동부장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지역”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지도한계”라 함은 규칙 별표 18의 인력기준 1인당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장수를 말한다.

3. “담당요원”이라 함은 규칙 별표 18의 인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지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영·규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판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1994-45호, 이하 “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구분) ①전문기관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 전문기관, 전기·전기통신공사 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순수건설공사 전문기관 : 건설공사 전반(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

부 록 1-4

2. 전기 · 전기통신공사 전문기관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③규칙 별표 18의 인력기준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이공계대학 건설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2. 전기 · 전기통신공사 전문기관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이공계 대학졸업자 1인 이상

제 2 장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조(지정신청) ①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규칙 별표 18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설 · 설비 명세서

4. 건물등기부등본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부 설치계획서

6.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전문기관은 제1항 제5호의 지부설치계획서에 의한 지부설치는 규칙 별표 18의 인력 ·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각 지부의 지도지역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이 지부를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 지방노동관서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의 심사)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구비여부

2. 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 ·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여부(다른 목적의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력 · 시설 및 설비와 중복 사용할 수 없음)

3. 지도지역내의 기술지도대상 건설사업장 수 및 업무수행거리 등 기술지도업무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②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인력 · 시설 현황, 지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 지정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의 위치 및 지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순수건설공사 및 전기 ·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조건란에 지도지역을 명시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록 1-4

1.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규정의 준수
2. 지도지역 및 지도한계의 준수
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적정 수수료의 준수

제7조(전문기관 운영규정) ①전문기관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본부에서 이를 총괄관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 지도업무의 범위 및 지도방법
2. 직제,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제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정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지도를 거부하거나 이를 해태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업무를 행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때

②지방노동관서장은 지도감독 결과 제1항 각호의 지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미리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 3 장 기술지도 업무

제9조(지도한계) ①전문기관의 지도한계는 담당요원 1인당 사업장수를 30개소로 한다. 이 경우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②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기술지도는 규칙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기술사가 1회 이상 직접 방문을 통하여 행하되, 1개소에 1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기술지도의 개시)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 실시하고,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2월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지도업무) ②전문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착용에 관한 사항
5. 간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시의 작업환경 측정, 환기·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6.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 작업간 작업동선 교차에 따른 위험분

부 록 1-4

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8.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②전문기관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제1항 각호의 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기술지도지침을 작성·시행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그 지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기술지도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미이행사업장 현황 및 미이행사항 등을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사업장의 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지도결과의 기록) ①기술지도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1부는 당해사업장에 교부하고 1부는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 안전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진촬영을 하여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담당요원의 지정)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시 공사의 종류, 공사규모, 담당사업장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보존)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

류를 비치하고 기술지도 종료 후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사업장 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전문기관의 직무수행 관련서류

제15조(휴·폐업 등) 전문기관이 휴·폐업 또는 기술지도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폐업 또는 기술지도업무 중단 30일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전문기관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늦어도 2월내에 전년도 기술지도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해지현황 보고) 전문기관은 매분기마다 기술지도계약체결 사업장 및 계약해지사업장 현황(기술지도기간 동안의 재해발생현황 포함)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지부의 인력·시설기준 및 지도한계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총괄하여 지도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